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1

발의연월일: 2020. 6. 10.

발 의 자: 김정재・金炳旭・성일종

정진석 · 송석준 · 정운천

송언석 • 태영호 • 김기현

허은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을 추진하고 있음.

해당 개정안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'특례시'를 도입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처리 및 행정·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 인구 100만 이상대도시를 특례시,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임.

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%를 초 과한 상황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, 지방자치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 및 처리를 위하여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필요함.

이에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발전의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인구 50만 이상 대도시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- 2.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
- 3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
- ②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재정·면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	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
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	①
치시를 제외한 <u>인구 50만 이상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<u>대도시</u> 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	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</u>
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	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 및 인
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	<u>구 50만 이상 대도시</u>
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	
수 있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
	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
<u>&lt;신 설&gt;</u>	3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
	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
	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
	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
	는 대도시
<u>&lt;신 설&gt;</u>	②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
	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
	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특
	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
	체의 경제·재정·면적 등 지역
	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